

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처리기준 제정 사전예고

1. 규정 명칭 : 「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처리기준」

2. 제·개정 이유

- ☐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관련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「금융혁신 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사업의 세부 사업방안 마련

3. 주요 제·개정 내용

- 가.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의 세부 상품 요건(지급보증대상 및 요건 등)
나. 커버드본드 지급보증의 취급 절차, 지급보증요율, 사후관리, 지급보증채무이행 절차 등

4. 의견제출

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개인은 2024년 05월 20일까지 (도착기준) 홈페이지에 의견을 등록하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증권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
나. 제출자의 성명(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
<보내실 곳>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 6층
- 담당자(이메일) : 차장 강현구(hyeongukang@hf.go.kr)
- 전화번호 : 02-2014-7573
- 팩스번호 : 0505-036-0586

붙임 : 「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처리기준」 제정안 전문. 끝.